

제341회 정례회
2015. 7.14.(화)

심 사 보 고 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2
----------	-----

2015. 7. 14.(화)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6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7월 6일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가. 제안이유

- 2008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종합연수타운 조성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제천연수타운 조성사업은 대안사업 지원으로 사실상 종료되어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학두)

가. 제천종합연수타운은 연수원 건립 수요 미비, 입지의 한계, 높은 조성원가 등으로 인한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미진하였음.

나. 2011년도에 제천시에서 건의한 대안사업 2건을 추진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제천종합연수타운 부지로 구상했던 사업부지 일부는 제천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미니복합타운 추가개발로 변경 고시됨*.

다. 해당 지역인 제천시에서도 조례 폐지에 동의하였으며,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 충청북도 고시 제2015-47호(2015년 3월 27일) ‘제천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종합연수타운”이란 제천시 신월동과 봉양읍 미당리 일원에 조성하는 연수기관의 집단화 지역을 말한다.
2. “연수기관”이란 공공기관·단체, 기업체가 교육, 훈련,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 내에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종합연수원”이란 공공기관·단체가 제천종합연수타운 내에 연합하여 설치·운영하는 연수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천시장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과 연계하여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2.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
3.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어학타운 등의 설립 지원
5. 기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국가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기관유치추진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에 입주할 연수기관 유치를 위하여 연수기관유치추진단(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천시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